

충청북도청남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검토보고서



행정문화위원회

수석전문위원 곽영학

# 충청북도청남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제 출 자 : 허창원 의원 등 7인

2. 제출일자 및 회부일자

- 제출일자 : 2019년 8월 13일
- 회부일자 : 2019년 8월 14일

3. 제안이유

- 장애등급제 폐지(7.1.)에 따라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등급 인용 조항을 개정하는 것과
- 청남대 내에 청년일자리 지원을 위한 판매시설이나 사회적경제 기업을 위한 판매시설 설치 등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는 것임.

4. 주요내용

- 시설 설치·운영 및 허가사항 추가(안 제7조)
  - 청년일자리 지원을 위한 판매시설
  - 사회적경제기업(사회적기업·마을기업·사회적협동조합·자활기업)을 위한 판매시설
- 장애등급 인용 조항 개정(안 제4조제2항)
  - 1~6급까지의 장애인 → 등록된 장애인
  - 1~3급까지의 장애인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5. 검토의견

- 이 개정조례안은 장애등급제 폐지에 따른 용어 개정과 청남대 내에 청년일자리 지원을 위한 판매시설이나 사회적경제기업을 위한 판매시설 설치 등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는 것임.
-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 장애등급제 폐지에 따른 용어 개정은 제도의 개선을 조례에 반영하는 것으로 이견이 없음.
  - 청남대 내에 청년일자리 지원을 위한 판매시설이나 사회적경제기업을 위한 판매시설 설치 등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는 규정은 청년일자리 확대나 사회경제적기업 육성을 위해 충청북도에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것으로 적절하다고 판단됨.
  - 다만 입법예고 기간 중 청남대 내에 물품 판매소를 운영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이유로 청남대 내에 청년일자리 지원을 위한 판매시설이나 사회적경제기업을 위한 판매시설 설치 등에 관한 규정 삭제를 희망하는 의견을(문의면 대표단체 연합회) 접수 받았으나, 의견 제출자가 제시한 반대사유는 앞으로 해당 규정이 신설되어 청남대관리사무소가 적절하게 운영이 된다면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 청남대가 상수원보호구역에 위치해 있지만 지역주민들을 위한 농산물 판매소 설치 등은 법령의 범위 내에서 가능하므로 청년실업자 및 사회적경제기업의 판로를 돕도록 하는 이번 조례 개정은 적절하다고 판단됨.

붙임: 충청북도청남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끝.